



2025년 1월부터

농지개량 제도가 시행됩니다.



농지개량이란?

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

① 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 설치 또는 ② 객토·성토·절토 또는 암석채굴 행위를 말합니다.

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.

농지개량을 위해 성토·절토할 경우
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다만, 다음의 경우
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<p>현행</p> <p>농지개량 기준 준수</p>	<p>개선</p> <p>농지 소재 시·군·자치구 농지부서에 신고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

※ 개량 기준 미준수 또는 개량행위 미신고 시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
- ① 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천㎡ 이하
- ②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cm 이내
- ③ 「국토계획법」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
- ④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
- 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

농지개량 기준이 변경됩니다.

농지개량 행위는

- ①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.
- ②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.
- ③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.
- ④ 피해가 예상된다면 안전조치(흙막이, 옹벽 등)를 해야 합니다.



성토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.

객토와 절토도
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- ①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 사용
- ②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
- ③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
- ④ 다음의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할 것
 - pH : 5.0 이상 7.5 이하
 - 전기전도도(EC)(dS m⁻¹) : 2.0 이하
 - 모래 함량(%) : 70 이하



객토

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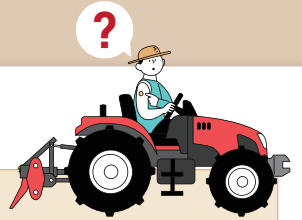
절토

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할 것



※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4] 참고

Q & A






Q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럼에도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요?

A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후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?

A 성토(또는 절토)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천㎡ 이하이거나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cm 이내라면 농지개량 행위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.

면적·높이·깊이 계산 방법

<p>① 면적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필지 총 면적 (1,200㎡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: 5px auto; width: 60%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실제 성토면적 (900㎡)</p> </div> </div> <p>공부상 필지 면적이 1천㎡ 이상이라면 일부 면적만 성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.</p>	<p>② 높이</p>  <p>성토 높이는 성토 전 가장 낮은 지점에서부터 성토 후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의미합니다.</p>
<p>③ 깊이</p>  <p>절토 깊이는 절토 전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절토 후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의미합니다.</p>	<p>④ 높이·깊이</p>  <p>성토와 절토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 성토한 높이와 절토한 깊이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</p>

Q 1년간 높이 30cm씩 성토를 2회 실시하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?

A 성토를 수 차례 실시하는 경우 그 높이는 최근 1년간 성토를 실시하기 전 원지반의 높이에서 향후 실시할 예정인 성토 높이까지의 누적 값으로 측정합니다. 따라서 첫 번째 성토 시에는 높이가 30cm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번째 성토 시에는 누적 높이가 60cm이므로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이 됩니다(절토도 동일).
 ※ 제도 시행일('25년 1월 3일) 이후 해당 필지에서 이루어진 성토 및 절토부터 합산

Q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토양성분 분석을 어디에 의뢰할 수 있나요?

A 성토를 하고자 농지개량 신고를 하는 경우 ① 토양오염우려기준과 ② 토양성분 기준(pH, EC, 모래 함량)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토양오염조사기관(79개소), 토양성분 기준은 비료 시험연구기관(54개소)에서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
 ※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,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(농촌진흥청 고시) 제2조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.

Q 농지개량행위 신고 시 토양오염우려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?

A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중 중금속 8종(카드뮴, 구리, 비소, 수은, 납, 6가크롬, 아연, 니켈)에 대한 검사 성적서만 제출하면 됩니다.

